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농업재해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푸드테크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종자수입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 심사요건 강화 전담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평가대상 조직 중 농산업 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과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의 평가기간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재설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6년 7월 1일) 및 행정체계 개편 사항 누락 등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및 중부지역본부, 용인가축질병방역센터, 영남지역본부 부산신항사무소의 관할구역 명칭을 현행화하여 행정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0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이 장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을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인천공항지역본부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및 옹진군 북도면

별표 1의 중부지역본부의 관할구역란 중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운서동·용유동·옹진군”을 “인천광역시 영종구 및 옹진군”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용인가축질병방역센터의 관할구역란 중 “(수원시·과천시·성남시·하남시·부천시·안양시·안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오산시·화성시·광명시·평택시·광주시·안성시·용인시·이천시·여주군·양평군)”을 “(수원시·과천시·성남시·하남시·부천시·안양시·안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오산시·화성시·광명시·평택시·광주시·안성시·용인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영남지역본부의 부산신항사무소의 관할구역란 중 “녹산동·명지동 및 천가동”을 “녹산동·신호동·명지1동·명지2동 및 가덕

도동”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영남지역본부의 부산신행 사무소의 관할 구역란 중 “녹산동·명지동 및 천가동”을 “녹산동·신행동·명지1동·명지2동 및 가덕도동”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64”를 “668”로, 일반직 계 “660”을 “664”로,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33”을 “135”로,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07”을 “109”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666”을 “670”으로, 일반직 계 “662”를 “666”으로,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37”을 “139”로,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93”을 “95”로 한다.

별표 12의 제목 중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 (제30조제3항 관련)”을 “농식품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 (제30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6”을 각각 “217”로, 3급 또는 4급 이하 “215”를 “216”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호 다목의 평가기간란 중 “202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9월 30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 사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농식품인재개발원) ① (생략)	제25조(농식품인재개발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이장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에</u>	② <u>농식품인재개발원</u> -----
운영지원과 · 교육기획개발과	-----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 ⑤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64	668	+4
일반직 계	660	664	+4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33	135	+2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 사 · 공업주사 · 방재안전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 주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 ·	 <u>107</u> · ·	 <u>109</u> · ·	 +2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666</u>	• <u>670</u>	+4
일반직 계	• • <u>662</u>	• • <u>666</u>	+4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 • <u>137</u>	• • <u>139</u>	+2
• •	• •	• •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 사 · 공업주사 · 방재안전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 주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 ·	 <u>93</u> · ·	 <u>95</u> · ·	 +2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4]

국립종자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16	217	+1
일반직 계	216	217	+1
3급 또는 4급 이하	215	216	+1